



한부모 세대(이번 급부금을 받은 가정)가 아닌 가정을 대상으로

육아세대 생활지원 특별급부금 에 관한 안내

육아세대의 지원을 위해 **새로운 급부금을 지급**합니다!

1. 지급 대상자

①, ② 모두에 해당하는 자(※ 한부모 세대분의 급부금을 지급 받은 자는 제외)

① 2022년 3월 31일을 기준으로
만 18세 미만의 아동(장애 아동의 경우에는 **만 20세 미만**)을 양육하는 부모 등
(※ 2023년 2월 말까지 태어난 신생아 등도 대상에 포함됩니다.)

② {
■ 2022년도 **주민세(균등할)가 비과세**인 자
또는
■ 2022년 1월 1일 이후 수입이 급변하여
주민세 비과세에 상당하는 수입이 있는 자

2. 지급액

아동 1인당 일률 지급 5만엔

■ 급부금 지급에는 **신청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와 신청이 필요한 경우**가 있습니다. 반드시 뒷면의 지급 절차를 확인하십시오.

* 문의는 아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.

■ 후생노동성 콜센터

0120-400-903

(접수 시간: 평일 9:00~18:00)

자세한 신청 방법은 거주하는 지자체의 '육아세대 생활지원 특별급부금 (한부모 세대 제외) 담당 창구'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3. 급부금의 지급 절차

I. 2022년 4월분의 아동수당 또는 특별아동부양수당의 수급자로 주민세 비과세인 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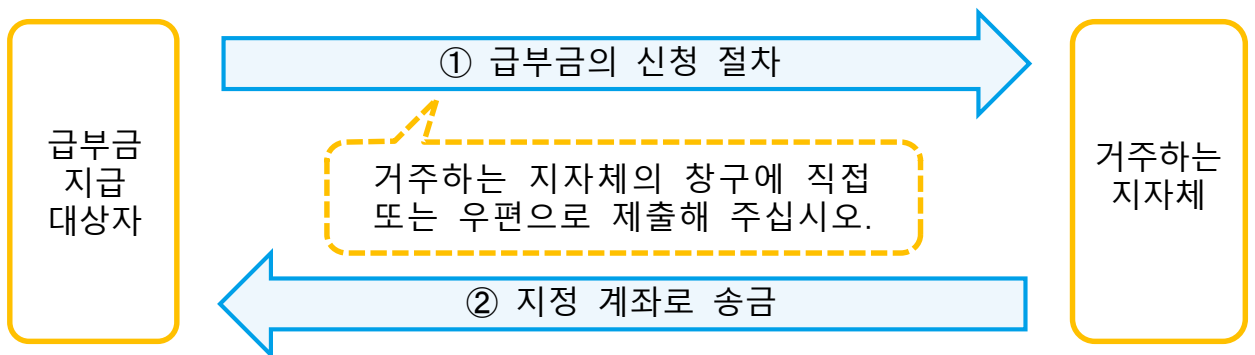
- ▶ 급부금은 **신청 없이** 받을 수 있습니다.
- ▶ 지자체별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2022년 4월분의 아동수당 또는 특별아동부양수당을 지급하는 계좌로 송금합니다.

【주의 사항】

- ※ 급부금 지급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급거부 신고서를 송부해 주십시오.
- ※ 아동수당 또는 특별아동부양수당을 지급받기 위해 지정한 계좌를 해지하는 등 급부금 지급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입금 지정 계좌를 변경하는 등 관련 절차를 완료해 주십시오.

II. 상기 이외의 경우(예: 양육 아동이 고등학생만 있는 자, 수입이 급변한 자)

- ▶ 급부금을 받기 위해서는 **신청이 필요**합니다.
- ▶ 신청서에 입금 계좌 등을 기입하고 필요 서류를 동봉하여 거주하는 지자체의 **창구에 직접** 또는 **우편**으로 제출해 주십시오.
- ▶ 급부금의 지급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, 신청 내용을 확인한 후 지정 계좌로 송금합니다.



‘육아세대 생활지원 특별급부금’의

“보이스피싱” 및 “개인정보 사취”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

자택 및 직장 등으로 지자체(도도부현 및 시구청촌), 후생노동성(의 직원) 등을 가장한 수상한 전화나 우편이 도착했을 때는 거주하는 지자체 및 가까운 경찰서 또는 경찰상담 전용전화(#9110)로 연락하십시오.